

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87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17. 10. 16.
제 출 자	민원봉사실장

1. 제안 이유

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위임법명을 변경하고,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
⇒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3조)

- 민원봉사과장 ⇒ 민원봉사실장

다.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함(안 제4조제2항)

라.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함(안 제10조)

마. 운영세칙을 정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,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의2,
제88조~96조, 「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8. 17.~9. 6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개정현황

○ 개정완료(9): 창원시, 통영시, 진주시, 거제시, 김해시, 남해군,
창녕군, 함안군, 함양군

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”를 “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“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”민원봉사과장“을 ”민원봉사실장“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8조 중 “두되,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”를 “두고 간사는 지명

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심의·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 제목 “(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”을 “(현장조사 등)”으로 하고 “위원회는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p><u>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</u></p>	<p><u>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</u></p>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법 제91조제6항 위임내용을 제명에 명확히 규정함</p> <p>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개정</p>
<p>제2조(기능) 거창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</p> <p>2.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, 자료 수집 및 분석</p> <p>3.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</p>	<p><삭 제></p>	<p>법 제91조1항에 국가·도·군위원회 기능 명시되어있어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없으므로 삭제</p>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③ -----</p>	<p>법 제9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임을 명시함. “위원회”약칭표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1. 민원봉사과장, 도시건축과장 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(생략)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(생략) ② <u>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8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</u></p>	<p>1. <u>민원봉사실장, -----</u> 2. ----- <u><삭제></u>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 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2. <u>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 3. <u>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4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</p> <p>제8조(간사) ----- -----<u>두고,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</u></p>	<p>부서장 명칭 개정</p> <p>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준범위에서 벗어난 사항으로 삭제 법령에 “해촉”이라 되어있어 “위촉해제”라 순화하지않음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법 제91조제6항 위임근거 해석 ⑥ ~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(=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제시하고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(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함)</p> </div> <p>시행령 제88조제5항의 기준에 따라 규정함</p> <p>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10조(지명의 조사)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.</p> <p>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제11조(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</p>	<p><삭제></p> <p>제10조(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심의·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 위원회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현장조사 등) 위원회의 위원장은-- ----- ----- -----</p>	<p>현행 제2조 기능 삭제에 따라 삭제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 (심의의결 기능) 밖의 사항으로 삭제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제91조(지명의 결정)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~</p> </div> <p>제11조 현장조사나 제12조 운영세칙으로 충분함</p> <p>영 제95조 기준에 따라 규정 신설</p> <p>시행령 제93조 기준에 따라 조 제목 및 주체 개정함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<u>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----- ----- -----</p> <p><삭 제></p> <p><u>제12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	<p>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할 필요없으므로 삭제</p> <p>시행령 제96조 기준에 따라 개정함</p>

관계법령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91조(지명의 결정)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지명은 「지방자치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③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17.7.26.] [대통령령 제28211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87조의2(위원의 해촉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[본조신설 2015.12.31.]

제88조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13.6.11.>

③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·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
⑤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지사가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2.31.>

제89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(이하 "지명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1조(간사)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.

제92조(수당 등)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3조(현장조사 등)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4조(회의록)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95조(보고)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·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제96조(운영세칙)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[시행 2017.1.31.] [국토교통부령 제402호, 2017.1.31., 일부개정]

제99조(지명위원회의 보고)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
2. 회의록 사본 1부

□ 「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

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민원봉사실, 행정과, 기업지원과, 재무과, 복지정책과, 안전총괄과, 경제교통과, 문화관광과, 산림과, 환경과, 건설과, 도시건축과를 둔다.

~이하 생략~

□ 「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」 개정전문

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삭제

제3조(구성) ①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

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.

1. 민원봉사실장, 도시건축과장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삭제

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(이하 “상급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분과위원회 등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**지명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**

제9조(회의록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 및 심의결과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심의·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현장조사 등)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 삭제

제12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